

제2874호
2021.10.27.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홍 보 전 산 과 장 김 영 혜
전화: 3396-4951
(<http://www.junggu.seoul.kr>)

자 치 법 규

선 람	기관위원장

구 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1-780호 :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제2021-781호 :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
제2021-782호 :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회화사·화자금 대마구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
제2021-783호 :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회화사·화자금대마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1
제2021-786호 :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3
제2021-787호 :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6
제2021-791호 :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8
제2021-794호 : 서울특별시	중구 수인승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
제2021-795호 :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5
제2021-800호 :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원취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7
제2021-801호 :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유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0
제2021-802호 :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37

◎ 고 시

제2021-121호	세운자연휴식권지구 6-4-21구역도시자연형 재개발사업 공시완료 고시	43
제2021-122호	무교다동구역 제3지구 정비계획 (경관)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45
제2021-123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48
제2021-124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49
제2021-125호	난문구역 및 난문구역 제7-1지구 도시자연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경관)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50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1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illegible]

[입법예고]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780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
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차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기준이 개정되어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자원회수시설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 및 사업장용 종량제봉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청소행정 다변화에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장용 종량제봉투 사용 및 구청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내용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청소행정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청소행정과, 전화 : 02-3396-5485 팩스 : 02-3396-8754, email : 20160111811@junggu.seoul.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제17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 운반, 처리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출 일시와 장소를 지정 운영하며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를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출 일시와 장소를 지정 운영하며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 제1호 중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종량제봉투중 생활폐기물용은 흰색(반투명), 사업장폐기물용은 옅은 녹색으로 하고 특수종량제봉투는 흰색, 공공용 봉투는 청색으로 한다.”를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종량제봉투중 생활폐기물용은 흰색(반투명), 특수종량제봉투는 흰색, 공공용 봉투는 청색으로 한다.”로 한다.

별표 2(규격봉투가격의 구성내역)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2]

규격봉투가격의 구성내역(제5조 관련)

1. 일반종량제 봉투

○ 생활폐기물용 봉투 (단위: 원)

구 분	2017. 1. 1. ~ 2020.12.31.		2021. 1. 1. ~	
	판매가	판매이윤	판매가	판매이윤
3 ℓ	90	5	90	8
3 ℓ (재)	90	5	90	8
5 ℓ	130	8	130	12
10 ℓ (재)	250	15	250	23
20 ℓ	490	29	490	44
20 ℓ (재)	490	29	490	44
30 ℓ	740	44	740	67
50 ℓ	1,250	75	1,250	113
75 ℓ	1,880	113	1,880	169

2. 특수종량제봉투

(단위: 원)

구 분	2017. 1. 1. ~ 2020.12.31.		2021. 1. 1. ~	
	판매가	판매이윤	판매가	판매이윤
20 ℓ	2,040	122	2,040	184
50 ℓ	5,100	306	5,100	459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781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을 조례로 규정하여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작업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며, 서울시「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기준」이 개정되어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자원회수시설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 및 사업장용 종량제봉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청소행정 다변화에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안)
- 나. 사업장용 종량제봉투 사용 및 구청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내용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청소행정과, 전화 : 02-3396-5453, 5485 팩스 : 02-3396-8754, email : chldudddk77@junggu.seoul.kr, 20160111811@junggu.seoul.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그 처리를 대행 받은 업체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의 예외

- 가. 주간작업으로 인해 주민 보행, 차량 통행 등 주민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행사,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등 폐기물의 시급한 처리를 위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인1조 작업의 예외

- 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해 작업하는 경우
- 나. 적재중량 1.5톤 미만 차량으로 작업하는 경우
- 다.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 라.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기동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 마. 폐기물 수송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 바.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의 종류, 차량의 특수성 또는 작업 환경, 상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

제17조 제2항, 제3항, 제4항을 삭제한다.

제20조 제1항 중 “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제17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가정용 연탄재, 재활용 가능품,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제외한

다.”를 “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가정용 연탄재, 재활용 가능품,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
물,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21조 제1항 중 “다만, 일반종량제봉투는 “생활폐기물용”과 “사업장폐기물용”으로 구분한다.”를 삭제한다.

제21조 제2항 중 “일반종량제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종량제폐기물을 담되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용 봉투에,
제2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용 봉투에
담는다.”를 “일반종량제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가연성 종량제폐기물을 담는다.”로 한다.

제25조 제2항 중 “다만,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배출자에게는 폐기물처리
업자로 하여금 직접 공급하게 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별표3(종량제봉투 가격)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종량제봉투 가격(제20조 제2항 관련)

1. 일반종량제 봉투
- 생활폐기물용

용량	판매가격 (원)	
	2015.10. 1. ~ 2016.12.31.	2017. 1. 1. ~
3L	80	90
5L	120	130
10L	220	250
20L	440	490
30L	660	740
50L	1,100	1,250
75L	1,650	1,880

2. 특수종량제 봉투

용량	판매가격 (원)	
	2015.10. 1. ~ 2016.12.31.	2017. 1. 1. ~
20L	1,840	2,040
50L	4,590	5,100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782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
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구 환경미화원의 생활안정 및 사기진작을 위해 설치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기금운영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021년 12월 31일로 정해져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구청장 (참조 : 청소행정과, ☎ 02-3396-5454 FAX : 02-3396-8754 E-mail : pye5190@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1]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제3항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783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
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요구 및 대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여신청시 구비서류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구청장 (참조 : 청소행정과, ☎ 02-3396-5454, FAX : 02-3396-8754 E-mail : pye5190@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2]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대여신청시 구비서류) 중 “인감증명”을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786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
사무 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과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심의안전 처리기간 변경
- 수수료 납부 변경 및 신설
-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

3. 의견제출

이 조례 및(별표6)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가로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ysun7570@junggu.seoul.kr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가로환경과

3) 전 화 : 02-3396-5974 (팩스 : 02-3396-8821)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2021- 호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의 구성·운영)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안전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
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수수료) ② 수수료는 신청인이 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구청장이 관리하는 수입증지 계기로 인
증하여 신용카드,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 점검을 위탁
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제②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밖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제26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제26조 관련)

1의 2. 법 제10조 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법 제20조 제1항 제1 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 마다 3천원씩 더한 금액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 하인 경우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 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 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③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 접수일 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③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수수료)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수수료) ② 수수료는 신청인이 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구청장이 관리하는 수입증지 계기로 인증하여 신용카드,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 점검을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그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6]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6]과태료의 부과기준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787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릴 아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구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21.12.31.)함에 따라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양성평등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 존속기한 연장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여성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apple5077@junggu.seoul.kr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여성보육과

3) 전 화 : 02-3396-5403 (팩스 : 02-3396-8738)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기금의 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 -----.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개정

- 심의회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수 변경 : 7명→ 5명 이상 7명 이하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하여 외부전문가 위촉 인원 변경 : 3명→ 3분의 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민원여권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전화: 02-3396-4755, FAX: 02-3396-8648, E-mail: joanne211@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첨부 1.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행정정보의 공표)”를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으로 한다.

제12조의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심의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 중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청장이 자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공공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생략)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현행과 같음)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인 소속공무원 4명과 위촉직인 외부전문가 3명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민친화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과장, 기획조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공공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공공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794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주민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한 상위법 (헌법 제23조)의 취지에 맞게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수료 등 납부 시, 수입증지 사용원칙 규정 정비
 - 상위법 취지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재무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문의전화: 3396-5034, FAX: 3396-8674, 메일: foody7@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조표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①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 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 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전자영수증 형태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②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수수료 등의 납부)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사용료, 수수료 등은 계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1. (생략)

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수수료 등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은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수입증지 계기 등의 사용) ① 수수료 납부 후 수입증지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구청장은 계기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수입증지의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수입증지 영수증 발행) 수입증지 영수증은 구매인이 청구하는 경우 발행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수입금의 납입) 수입증지의 수입금은 수입발생 다음날까지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구금고에 납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는 제9조로 이동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 ①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 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 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② “전자수입증지”란 인 증 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제 증명 발급기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삭제>	제2조 (정의) ① ----- <u>서울특별시 중구</u> (이하 "구" 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전자영수증 형태로 -----. ②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인 증 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신설>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생략) 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수수료” ② 전자수입증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전자수입증지의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고,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결제 대행업체에서 입금한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한다.	제3조(수수료 등의 납부)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u>사용료, 수수료 등은 계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화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u> 1. (현행과 같음) 2. “----- -----등” ② <삭 제> ③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수입증지 계기 등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증지의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화한 증지에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② 전자수입증지의 관리책임자는 인 증 기 및 무인민원 발급기, 제 증명 발급기 등 각 계기의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계기의 관리책임을 맡은 부서의 장은 발행기관명·발행장소·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구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수입증지 계기 등의 사용) ① <u>수수료 납부 후 수입증지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u> ② <u>구청장은 계기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u>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u>수입증지</u>의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수입증지 영수증 발행) 전자수입증지 영수증은 구매인이 청구하는 경우 발행한다.	제6조(수입증지 영수증 발행) <u>수입증지</u> 영수증은 구매인이 청구하는 경우 발행한다.
제7조(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신 설>	제7조(변상책임) <u>수입증지</u>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8조(수입금의 납입) <u>수입증지의 수입금은 수입발생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되도록 하여야 한다.</u>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795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수료 등 납부 시 수입증지 사용을 의무로 하는 규정에 대해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전자정부법」에는 수수료 등 납부 시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 (안 제10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가로환경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문의전화:3396-6006, FAX:3396-8828, 메일:ldh4238@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수입으로 하며 현금,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수수료의 징수) ①·② (생략)	제10조(수수료의 징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수입으로 하며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③----- ----- 현금,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800호

이 조례 및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 이의신청 결과 확정 전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해야하는 불합리 시정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 단축 필요

2. 주요내용

-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변경
☐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 기간을 6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기획조정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문의전화: 3396-4913, FAX: 3396-8657, 메일:juhee24@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첨부 1.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이의신청) ①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이의신청에 대한 소명자료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이의신청) ①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소명자료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이의신청) ①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이의신청에 대한 소명자료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801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의료기기법」개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행하던 의료기기수리업 신고·관리 사무의 지자체이관에 따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보건소장에게 권한위임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에 따라, 주민접근성, 편리성을 고려하여 등장에게 권한위임

2. 주요내용

가. [별표] 개정

사 무 명	수입기관	개정내용
의료기기수리업에 관한 사무	보건소장	○「의료기기법」개정에 따른 신고·관리 기관 변경으로 의료기기수리업 사무 신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	등장	○「부동산 거래법」개정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업무 신설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보건소장	○「약사법」개정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업무 신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	보건소장	○「약사법」개정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업무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기획조정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기획조정과, 전화 : 02-3396-4904, 팩스 : 02-3396-8657, email : ssanghun0203@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 임 사 무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1.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가. 6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 나. 의회내 별정직·임기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권 다.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제외)의 소내 전보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 지방자치법 제91조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구 의 회 사무과장 구 의 회 사무과장 보건소장 보건소장
2.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개설 및 변경사항 등록 나. 폐업·휴업·재개업신고 다. 지도·감독(보고와 검사 등, 업무개시 명령 등,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등, 개수명령,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라.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마. 약국제제의 제조업무 폐지 바. 청문실시 사. 과징금 부과·징수 아. 과태료 부과·징수 자. 등록증 등의 갱신, 재발급 차. 약국, 점포이외의 장소 의약품 판매승인 카. 포상금 지급 타.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약사법」제20조제2항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제69조 내지 제72조, 제74조 내지 제76조 ○ 같은 법 제41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2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2조 ○ 같은 법 제77조 ○ 같은 법 제81조 ○ 같은 법 제98조 ○ 같은 법 제8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 같은 법 제50조제1항 ○ 같은 법 제9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약사법」제21조의2	보건소장 보건소장
3. 의료기기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료기기판매업 등의 신고, 변경신고, 폐업신고 등의 수리 나. 지도·감독(보고와 검사 등, 회수폐기 및	○「의료기기법」제17조 ○ 같은 법 제32조, 제34조 내지 제36조	보건소장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공표명령 등, 사용중지명령 등,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다. 청문 실시	○ 같은 법 제39조	
라. 과징금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38조	
마. 과태료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56조	
바. 허가증 등의 재발급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사. 제조업자들의 지위승계 등	○ 같은 법 제47조	
4. 의료기관 업무에 관한 사무		보건소장
가. 개설신고	○「의료법」제33조제3항	
나. 변경신고	○ 같은 법 제33조제5항	
다. 휴·폐업신고	○ 같은 법 제40조제1항	
라. 지도·감독(업무개시명령, 보고와 업무검사등, 시정명령등, 개설허가 취소 등	○ 같은 법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3조, 제64조	
마.. 청문실시	○ 같은 법 제84조	
바. 과징금 부과·징수	○ 같은 법 제67조	
사..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92조	
5.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	○「의료법」 제35조	보건소장
6. 안마·접골·침구시술소에 관한 사항		보건소장
가. 안마시술소개설·변경신고·휴·폐업 및 지도감독 등	○「의료법」 제82조	
나. 접골·침·구시술소개설·변경, 휴·폐업신고 및 지도감독 등	○ 같은 법 제81조	
7.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개설등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나. 폐업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같은 법 제13조	
다. 보고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15조	
라.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 같은 법 제24조	
마. 과태료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33조	
바. 시정명령	○ 같은 법 제23조	
사. 청문실시	○ 같은 법 제26조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8. 치과기공소에 관한 사무		보건소장
가. 개설등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나. 폐업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같은 법 제13조	
다. 보고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15조	
라.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 같은 법 제24조	
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33조	
바. 시정명령	○ 같은 법 제23조	
사. 청문실시	○ 같은 법 제26조	
9.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나.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 같은 법 제34조	
다.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 같은 법 제35조	
라.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의료 기관의 응급의료시설 설치 신고	○ 같은 법 제35조의2	
10. 구급차등을 운영하는 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구급차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등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나. 구급차등의 운용의 정지 및 말소 등록 요청	○ 같은 법 제45조	
다. 구급차의 지도 감독	○ 같은 법 제50조	
라.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허가 취소 (신고대상인 경우 폐쇄) 및 업무의 정지	○ 같은 법 제55조제2항	
마. 청문	○ 같은 법 제56조	
바.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57조	
11. 세탁물처리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신고	○ 의료법 제16조 ○ 의료기관세탁물관리 규칙 제7조	
나.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지도·감독	○ 의료법 제16조, 제63조, 제64조 ○ 의료기관세탁물관리 규칙 제11조	
12.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및 변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조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나. 마약류취급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및 변경, 재발급	○ 같은 법 제7조	보건소장
다. 폐업 등의 신고수리	○ 같은 법 제8조	
라. 대마의 운반, 보관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마. 사고마약류의 사유보고 접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	○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바.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대한 승인	○ 같은 법 제13조	
사. 대마재배자의 보고 등	○ 같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아. 출입, 검사와 수거	○ 같은 법 제41조	
자. 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	○ 같은 법 제42조, 제43조	
차. 허가 등 취소와 업무보고 명령	○ 같은 법 제44조	
카. 청문의 실시	○ 같은 법 제45조	
타.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파.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13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의약품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	○「약사법」제45조	
나. 의약품 도매상 관리약사 신고수리	○ 같은 법 제45조	
다.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 같은 법 제47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제7호관련 별표6	
라. 지도·감독(보고와 검사 등, 업무개시명령, 폐기명령 등,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등, 사용중지명령 등, 허가 취소와 업무정지 등)	○ 같은 법 제69조 내지 제72조, 제74조, 제76조	
마. 청문	○ 같은 법 제77조	
바. 허가증 등의 갱신, 재발급	○ 같은 법 제8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사. 과징금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81조	
아. 과태료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98조	
자.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등	○ 같은 법 제89조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14.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변경	○「약사법」제44조의2	보건소장
나. 휴업·폐업 및 재개신고	○ 같은 법 제44조의2	
다. 지도·감독(보고와 검사 등, 업무개시명령, 폐기명령 등,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등, 사용중지명령 등, 허가 취소와 업무정지 등)	○ 같은 법 제69조 내지 제72조, 제74조, 제76조	
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 같은 법 제76조의3	
마. 청문	○ 같은 법 제77조	
바. 등록증 등의 갱신, 재발급	○ 같은 법 제8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사. 과징금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81조	
아. 과태료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98조	
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 같은 법 제44조의5	
15. 의료기기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의료기기수리업의 신고, 변경신고, 폐업신고 등의 수리	○「의료기기법」제16조	
나. 지도·감독(보고와 검사 등,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등, 사용중지명령 등,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 같은 법 제32조, 제34조 내지 제36조	
다. 청문 실시	○ 같은 법 제39조	
라. 과징금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38조	
마. 과태료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56조	
바. 허가증 등의 재발급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사.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등	○ 같은 법 제47조	
16.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항		동 장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 같은 법 제6조의3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802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위약금 최소화로 사용료를 납부하는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관리 및 운영자의 귀책 위약금제 도입으로 공공의
책임성 강화 및 이용자 중심의 환불 기준 마련
- 나. 상위 관련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용료 감면규정에 대한 개정

2. 주요내용

- 가. 사용료의 반환 및 위약금 규정을 조례 신설 (11조의2 사용료의 반환)
- 나.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요금 감면 규정 구체화(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
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동정부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전화 : 3396-4684, FAX : 3396-8613,
E-mail : kds0415@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첨부 1.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 호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사용료의 반환)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는 자가 신청을 취소하거나 제4조에 따른 관리 및 운영자의 귀책사
유로 인한 취소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와 위약금(총 사용료의10%)을 반환 할 수 있다. 다
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나열된 태풍, 홍수, 화재, 감염병 등과 같은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 발생 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는 경우에는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는 자의 강습 및 이용 신청 취소

- 가. 사용예정일 5일 전 : 전액 반환
- 나. 사용예정일 1~4일전 : 위약금 공제 후 반환
- 다. 사용예정일 이후 : 취소일 기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와 위약금 공제 후 반환

2. 제4조에 따른 관리 및 운영자의 강습 및 이용 취소

- 가. 사용예정일 5일 전 : 전액 반환
- 나. 사용예정일 1~4일전 : 전액반환 및 위약금 배상
- 다. 사용예정일 이후 : 취소일 기준 잔여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3.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는 자의 대관 취소

- 가. 사용예정일 5일 전 : 전액 반환
- 나. 사용예정일 1~4일전 : 위약금 공제 후 반환
- 다. 사용예정일 이후 : 반환 불가

4. 제4조에 따른 관리 및 운영자의 대관 취소

- 가. 사용예정일 5일 전 : 전액 반환
- 나. 사용예정일 4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 전액반환 및 위약금 배상

-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
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사용료에 연 100분의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다

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나열된 태풍, 홍수, 화재, 감염병 등과 같은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 발생 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는 경우에는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의 3항 1호를 개정하고 제2호부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자출신 포로 가족
 - 9. ~ 12.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 ④·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11조의2 (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는 자가 신청을 취소하거나 제4조에 따른 관리 및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와 위약금(총 사용료의10%)을 반환 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나열된 태풍, 홍수, 화재, 감염병 등과 같은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 발생 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는 경우에는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는 자의 강습 및 이용 신청 취소 가. 사용예정일 5일 전 : 전액 반환 나. 사용예정일 1~4일전 : 위약금 공제 후 반환 다. 사용예정일 이후 : 취소일 기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와 위약금 공제 후 반환 2. 제4조에 따른 관리 및 운영자의 강습 및 이용 취소 가. 사용예정일 5일 전 : 전액 반환 나. 사용예정일 1~4일전 : 전액반환 및 위약금 배상 다. 사용예정일 이후 : 취소일 기준 잔여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3.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는 자의 대관 취소 가. 사용예정일 5일 전 : 전액 반환 나. 사용예정일 1~4일전 : 위약금 공제 후 반환 다. 사용예정일 이후 : 반환 불가 4. 제4조에 따른 관리 및 운영자의 대관 취소 가. 사용예정일 5일 전 : 전액 반환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② (생 략)	나. <u>사용예정일 4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 전액반환 및 위약금 배상</u>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사용료에 연 100분의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나열된 태풍, 홍수, 화재, 감염병 등과 같은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 발생 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는 경우에는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③ ----- -----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현 행	개 정 안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2. ~ 5. (생 략) 9. ~ 12.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121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21구역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사완료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65호(2006. 10. 26.)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7호(2009. 3. 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19호(2014. 3. 27.)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54호(2017. 7. 19.)로 사업시행계획 인가, 2018. 2. 1.자로 사업시행계획 경미한 (변경)인가,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8-114호(2018. 10. 24.)호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2019. 3. 15.자로 사업시행계획 경미한 (변경)인가, 2020. 4. 14.자로 사업시행계획 경미한 (변경)인가, 2021. 1. 28.자로 사업시행계획 경미한 (변경)인가,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111호(2021. 9. 15.)호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2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3조에 따라 준공인가 처리하고 공사완료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2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2.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 중구 총무로4가 55알데, 2,153.3㎡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총무로개발 대표 양기철,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8-1, 1006호
 - 케이비부동산신탁(주) 대표 서남중,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 4. 준공인가의 내역
 - 가. 토지

시행면적(㎡)	대지면적(㎡)	정비기반시설(㎡)		비고
		합계	도로	
2,153.3	1,383.9	769.4	769.4	· 도로(소로1-1) : 591.1㎡ · 도로(소로3-27) : 178.3㎡

나. 건축시설

구 분	규 모	비 고
건축면적	저층부 986.82㎡	건폐율(저) 71.31%
	고층부 810.77㎡	건폐율(고) 58.59%
연 면 적	15,894.49㎡	용 적 률: 833.22%
층 수	지하4층/지상15층	높 이: 47.75m
용 도	생활형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공장	※ 지상1층 가로활성화용도 유지 ※ 지하1,2층 도심산업진흥시설 유지

- 5.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시 의제 처리된 각 개별법에 정하여진 신고 또는 허가사항은 같은 법 제85조에 따라 본 사업 준공인가에 따라 준공검사-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
- 6. 관계서류: 생략(서울특별시 중구청 6층 도심재생과 비치서류와 같음)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122호

무교·다동구역 제34지구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68호(1973.09.06.)로 재개발사업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382호(1978.11.30.)로 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공고 제292호(1989.03.29.)로 재개발사업 공사완료(을지로1가구역 제5지구)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07호(2012.08.02.)로 무교·다동·을지로1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통합)지정된 무교·다동구역 제34지구(완료 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무교·다동구역 제34지구 정비구역(변경없음)

나.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무교·다동 도시환경정비구역	무교동 45, 다동 115, 을지로1가 31일대	109,965.8	-	109,965.8	

다. 사업시행지구 지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무교·다동 제34지구	을지로1가 87번지	5,628.1	-	5,628.1	완료지구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628.1	-	5,628.1	100.0	-
정비기반시설 등	도 로	458.2	-	458.2	8.14	既 부담 (을지로1가 53, 87-3)
획 지	대 지	5,169.9	-	5,169.9	91.86	-

나.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사항(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라.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에 관한 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 정 구 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 거 이 주	
변경	무교·다동구역 제34지구	5,628.1	획지	5,169.9	을지로1가 8 7번지	1	-	1	-	-	

2)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비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기정 변경	무교·다동구역 제34지구	5,628.1	획지	5,169.9	을지로1가 87번지	업무 시설	32~33 34.6 이하	640~642.7	21/6	완료지구

바. 건축물의 배치·형태·외관 및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사.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3. 변경사유

- 재개발사업 완료된지 32년이 지난 무교·다동 제34지구에 대해 주변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옥외 주차장등 공지를 휴게공간으로 조성 및 저층부 가로활성화를 위한 증축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7호에 의거 경미한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하고,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재생관리지침에 부합하도록 조성코자 함.

4. 관계도면 : 붙임참조

○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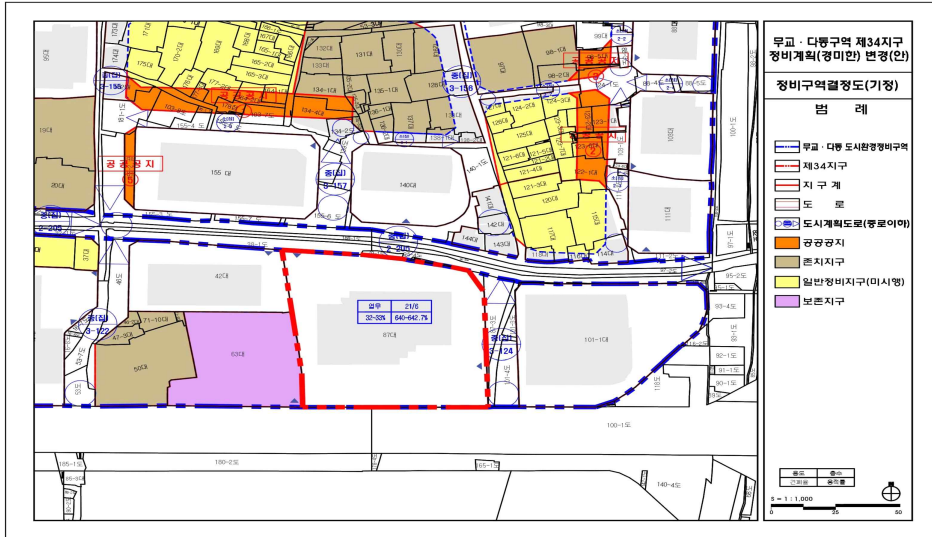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관계 도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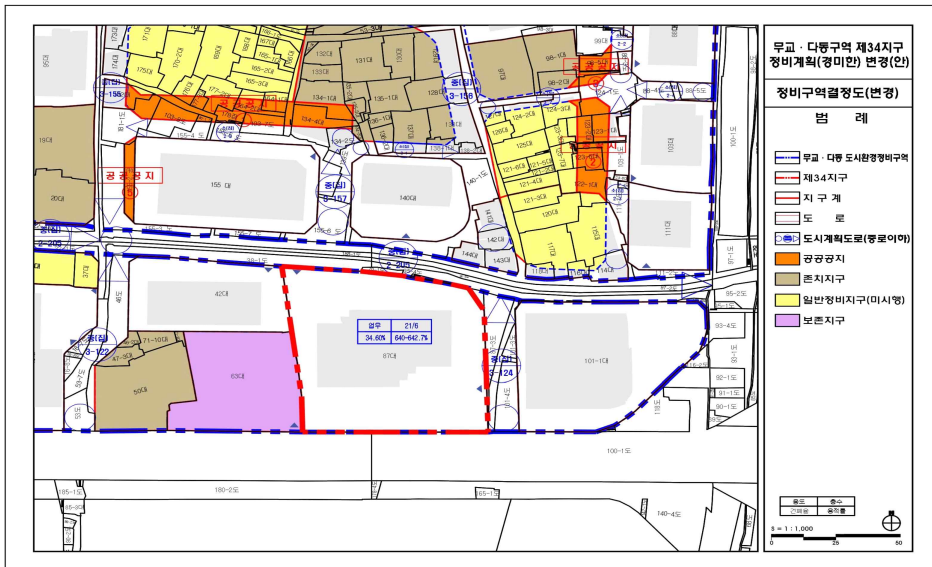
5. 열람장소

- 고시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 (02-3396-5774)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

■ 정비계획결정도(기정)



■ 정비계획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123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구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 로 명 부여기준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1715 외5필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21길 22	2021. 10. 27	신청에 따라 난계로21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 6. 30	난계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62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8길 3-7	2021. 10. 27	신청에 따라 마른내로8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 6. 30	마른내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2가 24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64길 6	2021. 10. 27	신청에 따라 퇴계로64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 6. 30	퇴계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3)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124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23길 15	2021.10.27	건물 철거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21길 18-3	2021.10.27	건물 철거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21길 20	2021.10.27	건물 철거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21길 22	2021.10.27	건물 철거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23길 17-3	2021.10.27	건물 철거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23길 17-1	2021.10.27	건물 철거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8길 3-7	2021.10.27	건물 철거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64길 6	2021.10.27	건물 철거
총 8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3)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도로명주소가 새로이 부여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125호

남대문구역 및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23호(1977.06.29.)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425호(1978.12.29.)로 정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411호(1982.10.13.)로 재개발사업시행 및 서울특별시공고 제662호(1985.11.08.)로 재개발사업 완료,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70호(2021.10.14.)로 정비계획 결정(변경)된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결정(변경없음)

구분	정비구역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구 남창동, 남대문로3가, 회현동1가, 충무로1가 일부	68,852.5	-	68,852.5	

2. 남대문 제7-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변경)

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조서(변경없음)

구분	정비구역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남대문구역 제7-1지구	중구 남창동 9-1번지 일대	2,194.6	-	2,194.6	•정비기반시설 : 도로(480.7㎡)

※ 1984.8.11. 재개발사업 완료 시 무상귀속된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제외

나.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다.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사항(변경없음)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마.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변경없음)

바. 건축물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 칭	면 적(㎡)	명 칭	면 적(㎡)						
기정	남대문구역 제7-1지구	2,194.6	획 지	1,713.9	남창동 9-1번지	주거	60 이하	996 이하	70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기정	• 주거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43호) -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주택 :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 건립 - 전용면적 40㎡ 이하 규모의 공공주택 : 전체 공공주택 세대수의 60% 이상 건립 • 건립 규모 및 비율								
		구 분		전용면적(㎡)		세대수		비율(%)		
		일반분양		29㎡ 이상 ~ 50㎡ 이하		244		82.4		
		공공주택		30㎡ 이하		52		17.6		
		공공임대주택		30㎡ 이하		15		5.1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30㎡ 이하		37		12.5		
		합 계				296		100.0		
	변경	• 주거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43호) -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주택 :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 건립 - 전용면적 40㎡ 이하 규모의 공공주택 : 전체 공공주택 세대수의 60% 이상 건립 • 건립 규모 및 비율								
		구 분		전용면적(㎡)		세대수		비율(%)		
		일반분양		24㎡ 이상 ~ 50㎡ 이하		207		77.5		
		공공주택		30㎡ 이하		60		22.5		
		공공임대주택		30㎡ 이하		15		5.6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30㎡ 이하		45		16.9		
		합 계				267		100.0		
심의완화 사항	기정	• 용적률 : 996.17% → 996% 이하 적용 ① 기준용적률 : 600% ② 허용용적률 : 130%								
		목 적		인센티브 대상		인센티브 완화 요건		산정방식		완화량
		친환경 개발 (의무)	녹색건축물 인증		녹색건축물 인증(그린 1등급)		정량부여		100%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		주거 190Wh/㎡·y이하, 비주거 240Wh/㎡·y이하					
			신재생에너지이용시설		주거 7% 이상, 비주거 11% 이상					
		도시경계 활성화	건축면적의 30% 이상을 전용 40㎡ 이하 주거도입 시		주거복합비율 56.36% 적용 (50% 이상 ~ 60% 미만 : 30% 완화)		주거복합 비율에 비례 최대 50%		30%	
		③ 상한용적률 : 266.17%								
구 분		인센티브 산식		산정방식		완화량				
공공시설(도로) 기부채납		허용용적률×1.3×a (a=부담면적÷대지면적)		730%×1.3×0.2805 (a=480.7÷1,713.9)		266.17%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기정	• 건축한계선 지정 : 퇴계로변 3m • 고층부 벽면한계선 지정 : 퇴계로변 4m								

3. 관련도면 : 붙임참조

가. 남대문구역 정비계획 결정도 등(변경없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관계도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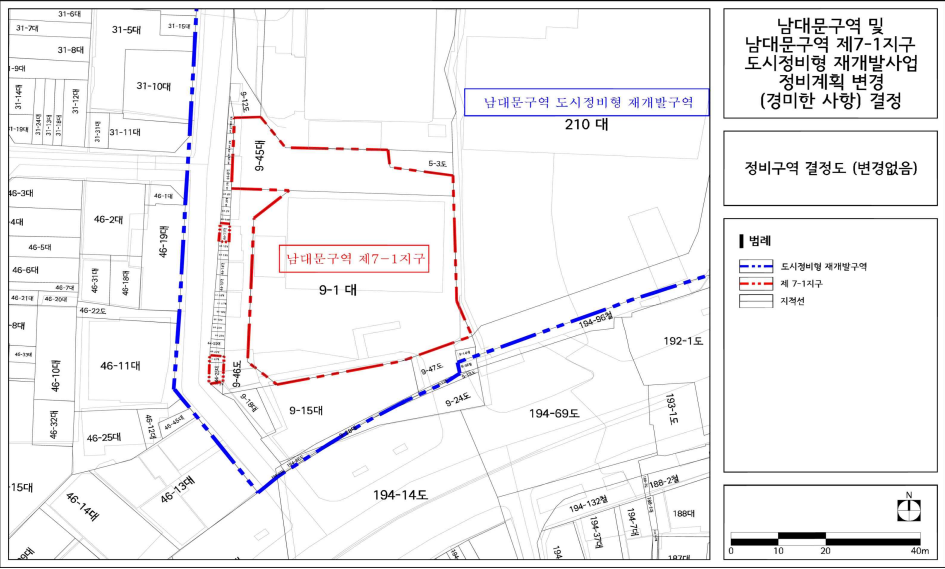
4. 열람장소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도심재생과(☎3396-5772)에 관계 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



<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

